

『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5년 05월 26일

나. 발 의 자 : 윤영철, 권기만, 김복자, 안장환, 안주찬
양진오, 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(9명)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05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06월 03일

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윤영철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보충질문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질문시간을 조정하여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시정질문 시간(답변포함) 조정(안 제72조의2제2항)
 -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
-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자의 범위 단서규정 신설(안 제72조의2제2항)
 -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2조, 제7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해

□ 검토결과

○ 본 개정 규칙안은

-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회의규칙을 일부 개정함으로써 보다 심도 있는 질문과 답변으로 시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,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목적으로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시정질문 시간(답변포함)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 (안 제72조의2제2항).
- 시정질문 시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음. (안 제72조의2제2항).

○ 검토결과

- 본 개정 규칙안은

시정질문 운영 방식에 있어 질문 시간(답변포함)을 현행 30분에서 40분으로 조정하고,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, 이번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시정 질문자의 심도있는 질문으로 1문 1답 시정질문 방식의 질적 향상과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회의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
- 수원시, 창원시 등 일부 지방의회에서도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명문 규정을 둔 사례가 있음.
-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